

정밀안전진단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※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:		
	대표자:	생년월일:	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	
	전자우편주소:		
	사업자등록번호:		

세부 내용	사업소 소재지		
	사업 등의 종류:	허가번호:	허가 연월일:
	진단을 받으려는 시설의 범위:		
	진단 희망 연월일: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------	----	--

처리 절차

